

디지털성범죄

해체하기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강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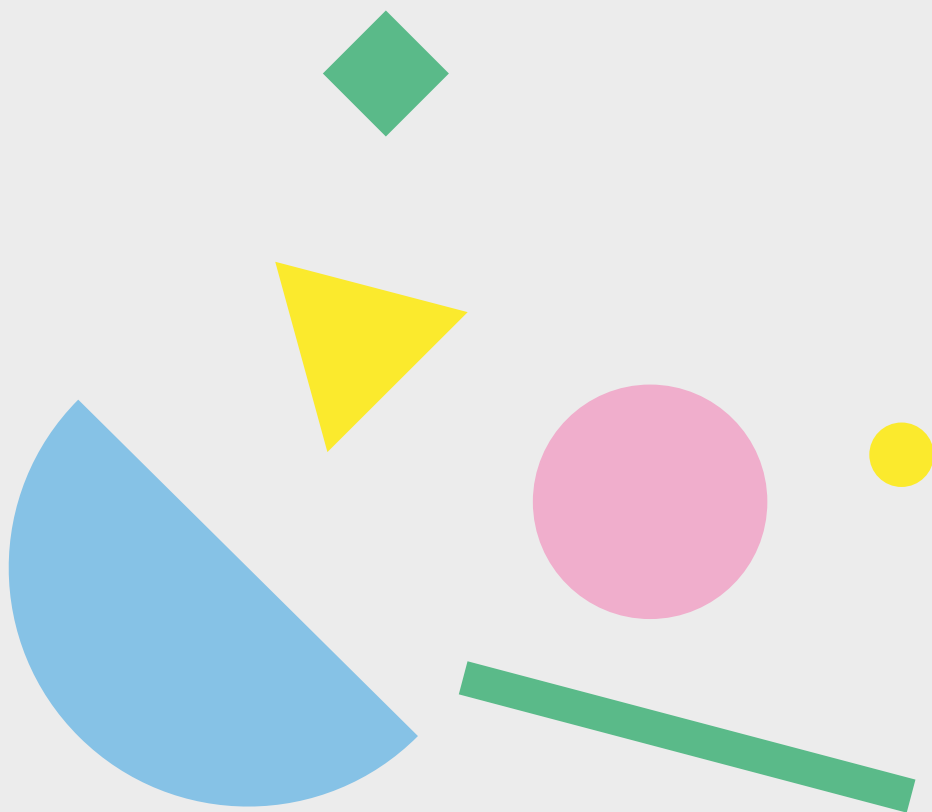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목 차



0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성범죄 현황

디지털성범죄 정의

02. 디지털성범죄 유형

불법촬영 / 유포, 재유포

유포협박 /
허위영상물 합성·제작·유포

소지·구입·저장 / 유통·소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그루밍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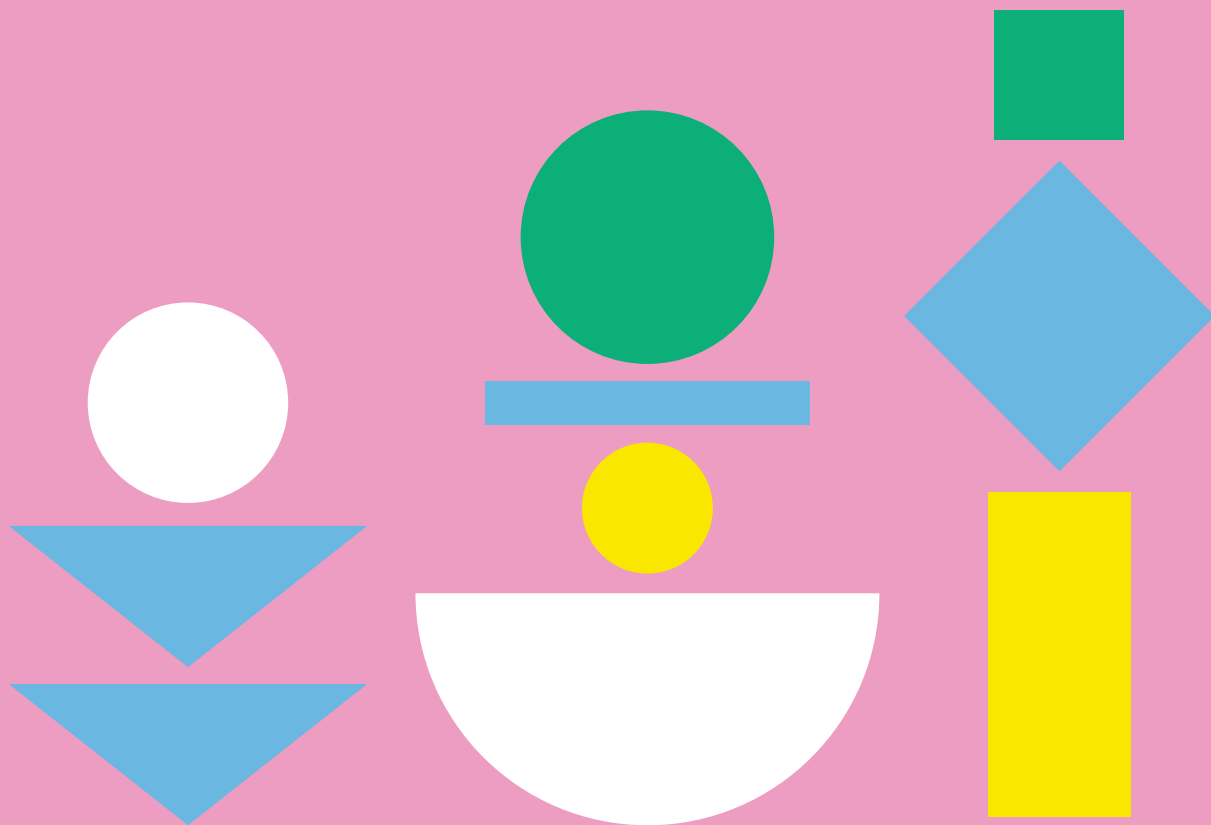
03. 디지털성범죄 해결하기

디지털성범죄 판례 해설

불법촬영물 생산·유통 시장구조

해결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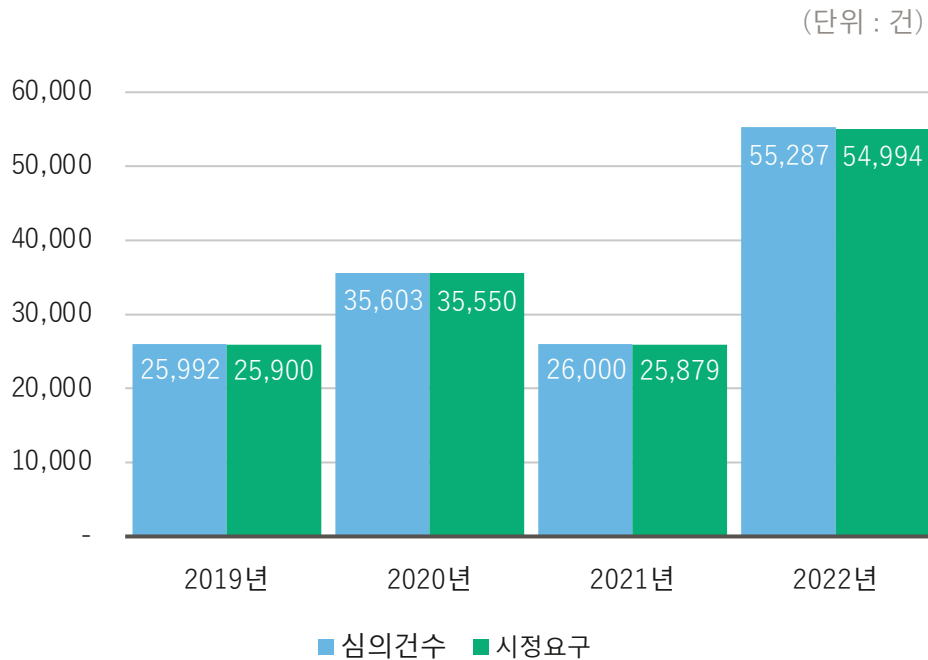
01. 디지털성범죄란?



01.디지털성범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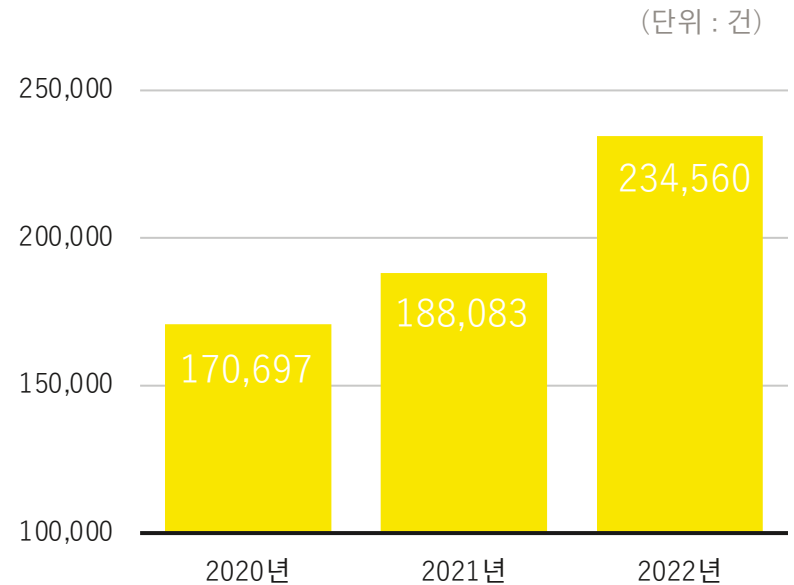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 현황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심의현황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출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1.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성범죄 정의

-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Tech-facilitated gender based violence)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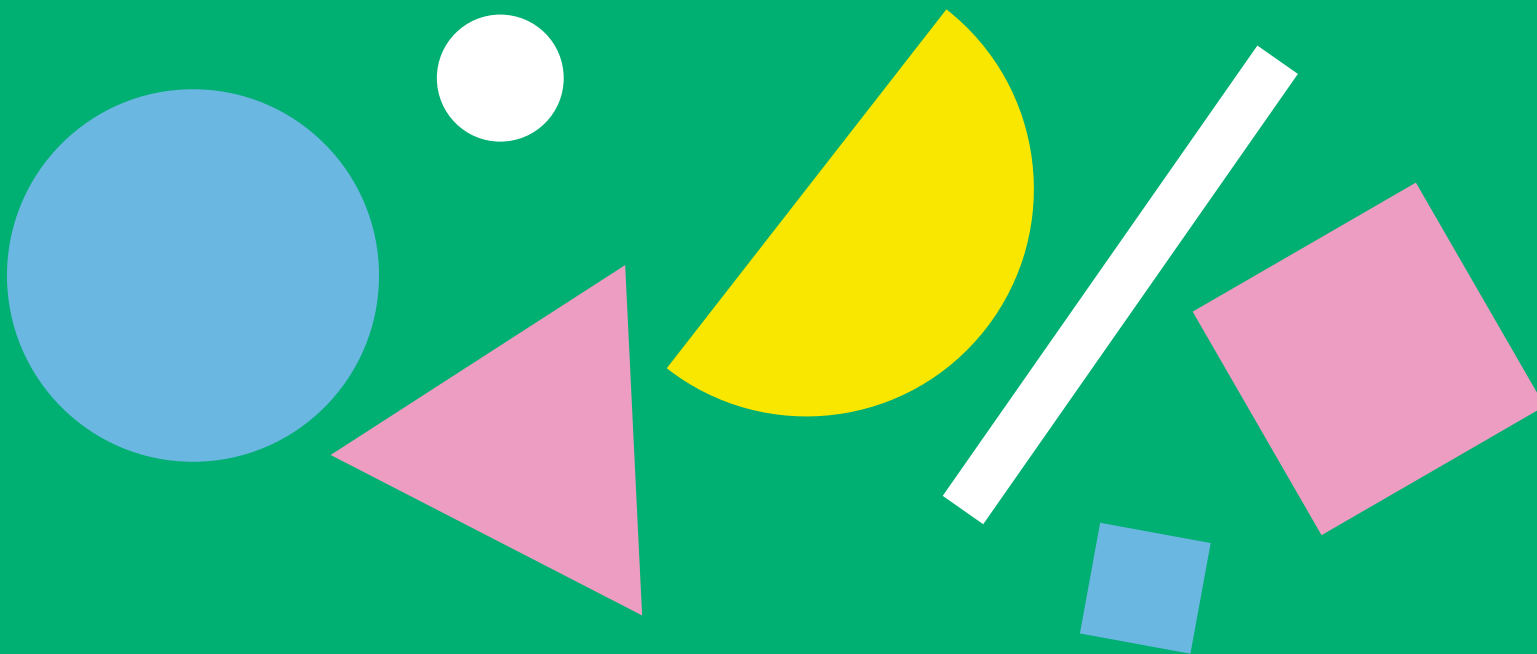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는 표현

- 디지털성범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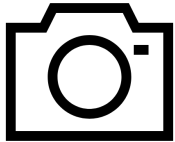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 일부·사생활·성적인 장면 불법촬영하는 행위,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는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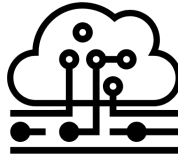
02. 디지털성범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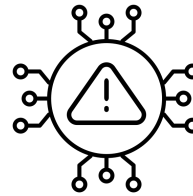
02. 디지털성범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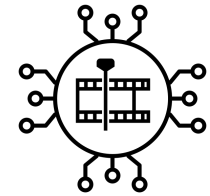
불법 촬영



유포 · 재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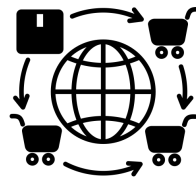
유포 협박



허위영상물
합성 · 제작 · 유포



소지·구입·저장



유통 · 소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착취 · 그루밍)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02. 디지털성범죄 유형

불법촬영 | 유포, 재유포

1. 불법촬영 | 성적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가해행위를 총칭하는 말

- 촬영 방법 : 가해자가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가해자가 직접 촬영 기기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촬영하도록 강제하기 등
- 불법촬영 행위 : 불법 촬영 기기를 숙박업소, 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한 후 탈의 장면 등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 등 공중이용시설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경우 등

2. 유포, 재유포 | 이미 촬영·제작된 성착취물, 피해촬영물을 유포 또는 재유포하는 행위

-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하여 촬영 당시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으나,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를 하는 경우
- 가해자들끼리 성착취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포 및 재유포가 이루어지는 경우
-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개별 SNS 계정 또는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 방대한 양의 영상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리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의 업로드 행위
- 불법 촬영물을 주로 다루는 특정 사이트 운영자의 방조행위

02. 디지털성범죄 유형

유포협박 | 허위영상물 합성제작 · 유포

3. 유포협박

성행위 촬영물 또는 피해자가 스스로 올린 비공개 촬영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가해행위

- 교제폭력, 스토킹, 만남 강요 등의 수단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및 SNS 계정 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취득한 경우
-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SNS에 익명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한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과거) 협박죄, 강요죄 → (현재) 2020. 5. 19.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이 신설되어 성폭력으로서 처벌

4. 허위영상물 합성제작·유포

피해자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편집하여 합성하거나 그러한 합성 편집을 의뢰하거나, 합성물과 그 복제물을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가 스스로 올린 이미지 혹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 편집을 하는 경우
- 허위영상물 제작을 광고하여 의뢰 모집 및 제안한 경우
-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 2020년 3월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

02. 디지털성범죄 유형

소지 · 구입 · 저장 | 유통 · 소비

5. 소지·구입·저장

소지자가 불법촬영물 또는 비동의유포 피해촬영물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6. 유통 · 소비

영리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하는 행위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착취 · 그루밍)

7.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하도록 하여 전달받는 범죄 행위

- 광고, 화보촬영 아르바이트 제안, 조건만남, 스폰서 제안 등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얻어내는 경우
- 삭제, 개인소장 등을 조건으로 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얻어내는 경우

그루밍 | 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심리적인 의존도를 악용하여 촬영물 등을 얻어내는 방식의 가해행위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 → (현재) 정보통신망에서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대화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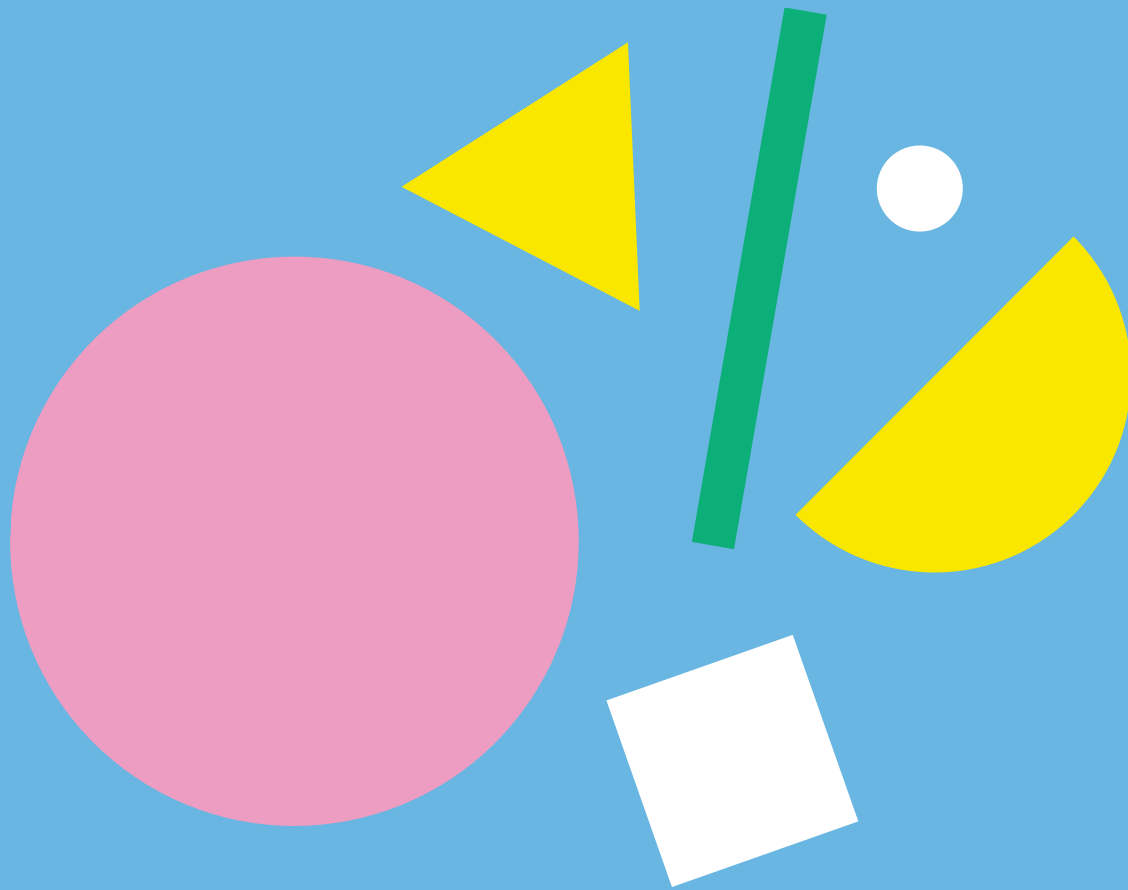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8.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성적 내용을 포함한 인신공격성 모욕 등 명예훼손행위, 성희롱, 성적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유출, 성범죄 모의, 성적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 전송, 채팅 및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신분도용 등의 행위

- 성착취물과 함께 이름, 나이, 직장, 학교, 주소, SNS 계정 주소 등을 노출한 사례
- 성적 내용을 포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명예를 훼손한 사례
- 신분을 도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유도하고 성범죄를 기획하여 실행한 사례
- 신체를 노출한 사진 전송, 성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례
- 온라인 불법 음란사이트 접속 링크를 제공한 사례 등

03.

디지털성범죄 해결하기



03. 디지털성범죄 해결하기

디지털성범죄 판례 해설

사례

A는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뒤쪽 출입문에서 있었다. A는 뒤 쪽에 앉아있던 승객B가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느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B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방향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A는 B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B는 ‘내려서 바로 지울테니 한 번만 봐 달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했다.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에서 B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70만원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 2심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출처] 대법원2020.12.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03. 디지털성범죄 해결하기

디지털성범죄 판례 해설

2심 판결 주요 내용

- B가 촬영한 A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는 상하의 모두 운동복을 입고 있어 일상적으로 많이 착용하는 옷차림 이었고, 외부로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적은 점 등을 보았을 때 운동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하였다.
-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하여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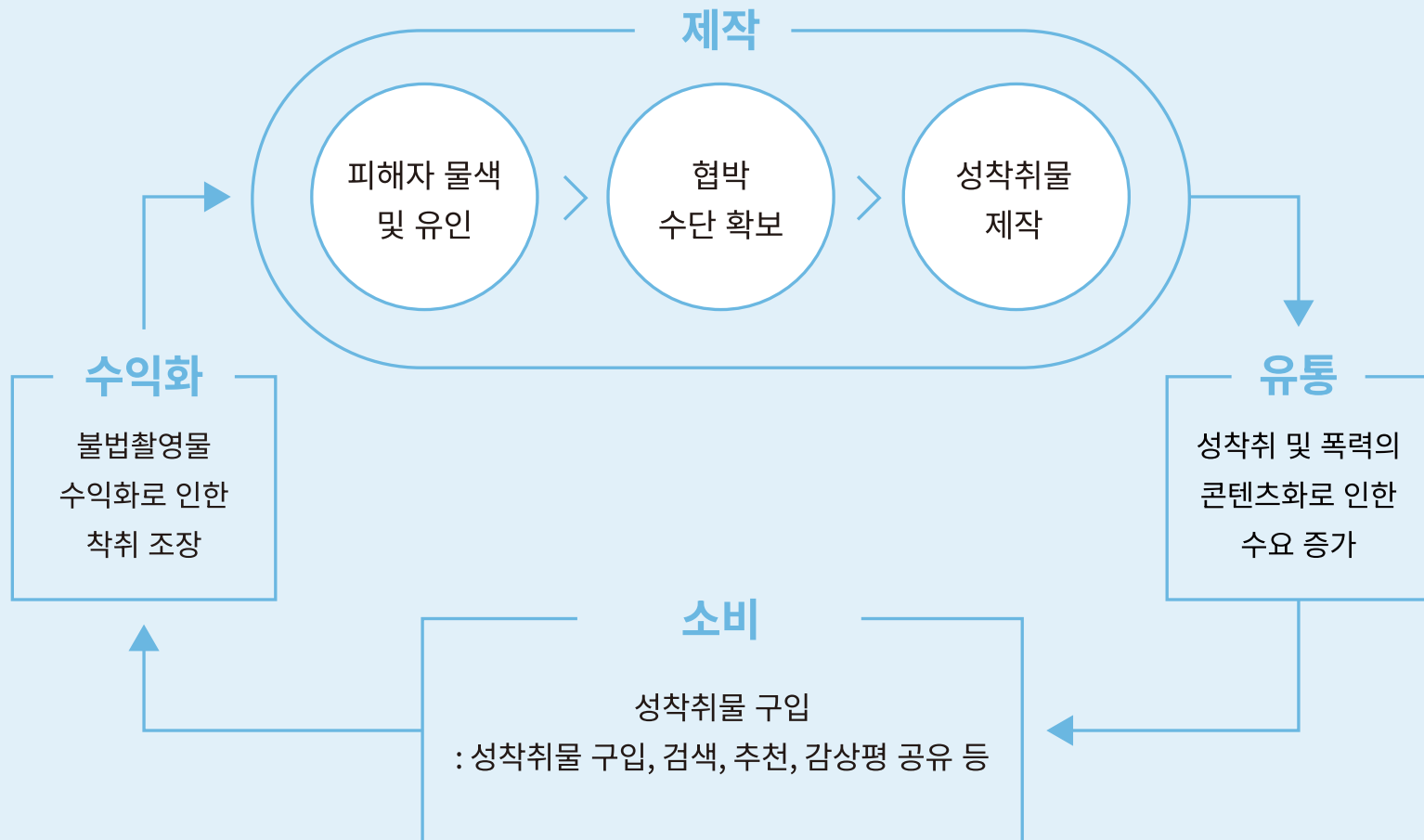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난 신체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 타인의 모습이 시야에 드러날 경우 일정 시간 동안만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 함부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

03. 디지털성범죄 해결하기

불법촬영물 생산·유통 시장 구조



03. 디지털성범죄 해결하기

디지털성범죄 해결을 위한 노력

01

불법촬영물 신고하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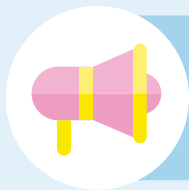
검색, 클릭, 공유, 저장 등 불법촬영물 소비 중단하기

03

내 주변 디지털성범죄 현황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 내기

03. 디지털성범죄 살펴보기

피해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디지털 성폭력·성범죄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요

- 여성긴급전화 1366 (전화/문자/카톡)
- 전국 해바라기 센터 (센터별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

성적촬영물 삭제·법률지원이 필요해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홈페이지 상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1377)

디지털성범죄 신고하고 싶어요

- 경찰청 112
-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앱 다운로드 → 온라인 그루밍 피해접수)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